

## 딥노이드

## 윤리강령

### 제1장 통칙

#### 제 1 조 [목 적]

이 규정은 주식회사 딥노이드(이하'회사'라 한다) 회사의 모든 임직원들이 건전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임직원들이 업무수행 시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#### 제 2 조 [적용대상]

이 규정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

#### 제 3 조 [용어의 정의]
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'윤리'란 행위의 옳고 그름과 선악을 구분하는 원칙이면서 행동의 기준이 되는 가치체계로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.
- ②'이해관계인'이란 일정한 사실 행위나 법률 행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것에 의해서 자기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을 말하며, 본인의 가족, 친족 등이 이에 해당한다.
- ③'이해관계자'란 본인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그룹을 말하며, 고객, 주주, 투자자, 소비자, 구성원, 협력회사, 국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.

#### 제 4 조 [윤리규정의 관리 조직]

- ①회사 윤리규정의 관리 조직은 인사위원회 조직으로 한다.
- ②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거나 규정의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인사위원회 조직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.

### 제2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

#### 제 5 조 [기본 원칙]

- ①업무수행에 있어 관련 법률과 회사 규정을 준수한다.
- ②직위와 직책에 따라 부여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,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는다.
- ③국적, 인종, 성별, 종교, 지연, 학연,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 대우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.
- ④성적 희롱이나 장애자에 대한 모독 등 사회적, 문화적 편견을 담은 일체의 언사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.

#### 제 6 조 [중요정보의 작성 및 관리]

①고의 또는 부주의로 사실과 다르게 문서 등을 조작하여 내·외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및 판단을 오판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②정보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고한다.

③부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지 아니하며, 취득한 정보를 부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거나 내·외부,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.

④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.

## 제 7 조 [회사자산의 정당한 사용]

①회사의 모든 자산(유형자산, 무형자산)은 절차에 따라 업무용으로만 사용하고,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.

②회사의 유형자산(지적재산, 영업비밀 등)은 재직기간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.

③지적 재산에 관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함과 동시에 자신의 권리도 보호한다.

## 제 8 조 [경쟁사·협력회사에 대한 자세]

①회사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, 공정거래에 관한 법규를 준수한다.

②협력회사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한다.

③적격한 모든 업체에 대해 거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고,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협력회사를 선정한다.

④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회사에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.

⑤협력회사는 회사의 윤리경영 정책을 충분히 숙지하고 윤리경영 활동에 적극 동참한다.

## 제3장 고객, 주주, 임직원에 대한 책임

### 제 9 조 [고객에 대한 책임]

①고객만족을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.

②고객 정보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.

### 제 10 조 [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책임]

①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, 제안을 존중한다.

②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.

③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제공한다.

④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한 경영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.

### 제 11 조 [임직원에 대한 책임]

①임직원의 사생활과 존엄성, 인격 등 개인의 기본 인권을 존중한다.

②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대하여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, 보상한다.

③임직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장과 사무환경을 제공한다.

## 제4장 윤리경영 조직문화

### 제 12 조 [공사의 구분]

①회사의 재산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며, 회사 자산의 횡령, 유용 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.

②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의 매매 등 유가증권 거래를 하지 않는다.

③이해관계인의 이름으로 회사와 거래행위 (납품, 용역제공 등)를 하지 않는다. 단, 사전에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, 타 이해관계자의 거래조건과 동일하게 정당한 절차를 통해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.

### 제 13 조 [건전한 조직 분위기 조성]

①임직원은 업무태만, 근태불량, 월권행위 등 조직의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②상하 및 동료간의 원활한 의사소통,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조직문화를 유지해 나간다.

③사내/외에서 성희롱, 차별대우, 폭언, 폭행 등의 임직원 간의 부당행위, 사행성 오락 등 건전한 조직문화를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
### 제 14 조 [정치적 참여 및 활동]

①임직원의 참정권 및 정치적 의사는 존중하되, 회사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.

②임직원은 정당, 정치인, 선거후보자 등에게 회사의 자산을 이용하여 기부금 또는 정치활동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다.

③회사의 인력, 시설, 장비 등을 기부금(금전 또는 물품)뿐만 아니라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.

## 제5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

### 제 15 조 [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]

①회사는 국내외 제반 법규, 국제협약, 회계기준 및 거래 관습을 존중하며 준수한다.

②시장경쟁의 원칙과 상도의 및 거래 관습을 존중하며,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.

③회사는 기업시민으로서 고용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.

### 제 16 조 [글로벌 기업으로의 책임]

①해외에서의 모든 사업활동은 해당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, 각국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여 수행한다.

②국제협약 및 각국의 공정거래를 위한 법률(미국 해외부패방지법, 영국 뇌물수수법, OECD 뇌물방지협약 등)을 준수한다.

③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리스트 자금 지원 방지 정책, 무역 제재 정책, 부패 방지 규정 준수 정책, 공정경쟁정책을 도입

하고, 관련 정책을 준수하도록 매년 교육을 실행한다.

### 제 17 조 [환경보호]

①환경보호와 관련된 국제기준, 관계법령 등을 준수한다.

②자원의 재활용 등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앞장선다

### 제 18 조 [안전, 건강 중시]

①안전에 관한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킨다.

②임직원의 건강과 업무수행 상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, 시행한다.

## 제6장 윤리규정의 준수

### 제 19 조 [기본원칙]

①임직원은 윤리규정을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

②회사는 윤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을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한다.

### 제 20 조 [신고의무]

임직원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행위가 윤리규정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, 당해 사실을 사이버제보 채널을 통하여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

### 제 21 조 [제보자 보호]

윤리경영 위반에 관한 제보자 신분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며,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.

### 제 22 조 [윤리규정 위반 시 조치]

①윤리규정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였다고 인지되거나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감사 활동을 시행할 수 있다.

②윤리규정 위반 행위라고 판명된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및 의결 조치한다.

③모든 임원 등 관리자는 소속 직원이 윤리규정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,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상벌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4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문서번호: DN-CR-024

제정일자: 2024.11.11.